

■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)

※ 특별공급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으로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.

구분	내용	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 •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(지역별 예치금액 이상) ※ 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제외 	
추천기관	구분	해당기관
	국가유공자	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
	장기복무 제대군인	
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
	중소기업 근로자	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
장애인	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	
당첨자 선정방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주체 → 해당기관 : 공문 및 안내문 발송 ② 해당기관 → 사업주체 : 추천 대상자 명단 통보 ※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※ 추천 대상자 명단 : 확정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 ③ 사업주체 → 한국부동산원 : 추천 대상자 등록 ④ 확정자(예비입주자 포함) → 청약홈 : 특별공급 접수일에 신청 	
우선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 대상자 순위 확정 통보 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공급 대상자(확정자 및 예비입주자)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• 예비입주자는 모든 특별공급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, 타 특별공급의 낙첨자와 함께 추천 •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•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(23.11.10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) 	